

#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17

제출일자 : 1999. 3. 9.  
제출자 : 거창군수

## ■ 개정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 지원함으로써 주택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 농공단지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여 대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으로써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 ■ 주요골자

- 조례 제4조 조 제목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함.(안 제4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안 제12조의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함.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 (안 제20조의 2)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함.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20조의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개정근거

-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경남도 세정 13415 ~ 10249('98. 11. 16))
-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경남도 세정 13415 ~ 10261('98. 12. 24))
-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경남도 세정 13405 ~ 10019('99. 1. 11))
-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경남도 세정 13415 ~ 10078('99. 2. 9))

#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2호 및 동조제5항제2호·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2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 (장애인소유 <u>승용자동차</u>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p> <p>&lt;신설&gt;</p>	<p>제4조 (장애인소유 <u>자동차</u>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2(<u>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u>) <u>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u></p>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u>제20조의2(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2호 및 동조제5항제2호·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u></p> <p><u>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에</u></li> <li><u>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u></li> </ol>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20조의3(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